

서울특별시 서울재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449
----------	------

2025년 2월 2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년 2월 3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: 2025년 2월 6일
- 다. 상정일자: 제3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5년 2월 24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)

- 가. 제안이유
- 업사이클링을 '재활용'으로 순화하는 동시에, 서울재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하여 운영 개선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.
- 나. 주요골자
- '업사이클링'을 '재활용'으로 순화(안 제2조~제4조, 제6조, 제10조).
 - 협의회 비상설화 및 부위원장직 폐지(안 제16조).
 -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직무 및 협의회 운영 조항 정비(안 제17조~제18조).
 - 그 밖의 자구 정비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
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반영)

※ (의견내용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은 이해충돌방지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
이므로 유지

※ (반영 사유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유지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사항 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10.31.~11.20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박귀수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‘업사이클링’ 용어를 ‘재활용’으로 순화하는 동시에 서울 재활용플라자 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<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 항	내 용	
안 제2조 등	· ‘업사이클링’을 ‘재활용’으로 순화	
안 제16조	제1항	· 위원 구성 변경(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→위촉직과 당연직)
	제2항	· 부위원장직 폐지
	제5항	· 협의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
	제7항	·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준용
안 제17조	· 위원장 직무 정비	
안 제18조	· 협의회 운영 조항 정비	

나. 검토의견

- ‘업사이클’은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로 2012년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공사(KBS)는 ‘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’를 통해 ‘업사이클(upcycle)’의 순화어로 ‘재활용’을 최종 선정¹⁾하였음.

또한, 시민과 서울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 「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」를 제정한바,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 내용 중 ‘업사이클링(upcycling)’을 ‘재활용’으로 순화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음.

- 안 제16조제1항, 제2항, 제5항 및 제7항은 협의회²⁾ 위원 구성을 변경³⁾하고

1) “‘업사이클’은 ‘재활용’으로-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선정-”(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'12.9.5.)

2) 서울재활용플라자 관리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

3)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→ 위원장 1명

협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며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.

비상설 협의회 전환은 동 협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하여 ‘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’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다만, 비상설 협의회 운영에 따라 위원 구성의 어려움과 위원의 소속감 저하 우려가 있는바,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.

<최근 3년간 협의회 운영 현황>

연 도	내 용
2022년	• 미개최
2023년 (7.7./12.20.)	• 2023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 및 2024년 추진계획 보고 •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방안 토의
2024년 (5.24./12.27.)	• 2024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 및 2025년 추진계획 보고 • 창업지원센터 업무 만료에 따른 업무 이관 방향 논의

-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비상설 협의회 전환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 등의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“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(용답동)에 위치해있으며, 새활용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업사이클링”이란”을 ““새활용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각각 “새활용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각각 “새활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설(이하 “소재은행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“새활용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전단 중 “서울새활용플라자”를 “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”로, “시설은”을 “시설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”을 “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2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”을 “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, “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”를 “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업사이클링”을 “새활용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”을 “위촉직과 당연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, 안건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⑦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, 제20조를 제18조로 한다.

제18조(중전의 제20조)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서울재활용플라자”란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시민의 재활용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 2. “<u>업사이클링</u>”이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. 3. ~ 5. (생략) <p>제3조(기능) 서울재활용플라자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2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문화 확산 4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에 대한 교육, 전시, 체험 공간 제공 5. (생략) <p>제4조(설치) 서울재활용플라자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내·외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, 기업, 단체, 기관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2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·작품을 생산·연구하는 공간 3. <u>업사이클링</u>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	<p>제2조(정의) ----- <u>뜻은</u>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(용답동)에 위치해있으며, 재활용</u>----- -----.. 2. “<u>재활용</u>”이란 ----- -----. 3. ~ 5. (현행과 같음) 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활용</u>----- ----- 2. <u>재활용</u>----- ----- 3. <u>재활용</u>----- -- 4. <u>재활용</u>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 <p>제4조(설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<u>재활용</u>----- ----- ----- 2. <u>재활용</u>----- ----- 3. <u>재활용</u>-----

현행	개정안
<p>제품·작품의 생산·연구 등에 필요한 소재를 조달·가공·판매하는 <u>시설(이하 “소재은행”이라 한다)</u></p> <p>4. <u>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제품·작품을 전시·판매하는 공간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6조(사용료) ① <u>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u></p> <p>② <u>사용료의 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<u>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, 기업, 단체, 기관</u></p> <p>2. <u>그 밖에 재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p> <p>④ <u>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>제10조(입주자 등 지원) ① <u>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한 업사이클링,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개인, 기업, 단체,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 시설</p> <p>4. <u>새활용</u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사용료) ① <u>시장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의 -----.</u></p> <p>② ----- <u>요율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2조제1항 -----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----- <u>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-----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-----.</u></p> <p>제10조(입주자 등 지원) ① ----- <u>새활용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구성) ① <u>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생략)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6조(구성) ① ----- <u>위촉직과 당연직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<u>위원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고, 안건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.</u>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
<p>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	<p>제17조(위원장의 직무) <u>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
<p>제18조(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<u>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<u>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</p> <p>② <u>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9조(위원의 해촉) ① <u>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한 경우</u></p> <p>2. <u>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</u></p> <p>5. <u>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</u></p>	<p><삭 제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</u></p> <p>6. <u>1년 단위(위촉일부터 기산(起算)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</u></p> <p>7. <u>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</p> <p>② <u>제1항제6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</u></p> <p>2. <u>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</u></p> <p>3. <u>천재지변, 응급상황,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</u></p> <p>제20조(운영) ① <u>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18조(운영) 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① ~ ④ (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p>